

1. 개정이유

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, 전동킥보드 등 저속 및 소형의 개인 이동기기의 포괄명칭으로 “개인형 이동장치”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, 용어 조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“전동보드” 품목명을 “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”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“전동보드” 품목명을 “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”로 단순 변경함 (시행규칙 개정안 [별표 2], [별표4]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나목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)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

별표 4 제2호나목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7)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2]			[별표 2]		
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			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(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)		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	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		
분류		모델 구분	분류		모델 구분
나. 생활	1)~6) (생략)	(생략)	나. 생활	1)~6) (생략)	(생략)
	7) 전동보드	○ 종류 ○ 재질 ○ 모양		7)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	○ 종류 ○ 재질 ○ 모양
	8)~16) (생략)	(생략)		8)~16) (생략)	(생략)
[별표 4]			[별표 4]		
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			안전확인대상제품(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		
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			2.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		
분류	품목		분류	품목	
나. 생활	1)~6) (생략)		나. 생활	1)~6) (생략)	
	7) 전동보드			7)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	
	8)~16) (생략)			8)~16) (생략)	